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
----------	---

제출년월일 : 2014. 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면 행정의 주민지원 폭을 넓히고 현장중심 행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면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나. 리 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주민생활권 등의 불일치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리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다. 조례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행정리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리 조정(리 분할 ⇒ 행정리 1개리 신설)
- 봉평면 흥정리를 흥정1리, 흥정2리로 분할 ⇒ 흥정2리 신설
- 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송정-호명지구, 회동-평안지구)
- 송정-호명지구 : 16필지
 - 회동-평안지구 : 2필지(지적재조사사업)

다. 조례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행정리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제2조 2항 및 제3항).

-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현재 분리하고자 하는 리의 3분의 2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하여야 할 것과, 제3항 규정에 의한 분리·신청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4.8.1~8.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원안동의

강원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3분의 2 이상”을 “현재 분리하고자 하는 리의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한다.

별지 1 중 미탄면란 및 봉평면란, 진부면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읍면명	리 명	이장정수	분리구명	구 역
미탄면 13	창 리	3	창 1 리	종전 창1리 일부
			창 2 리	종전 창2리 일부
			창 3 리	종전 창3리 일부
	울 치 리	1		종전 울치리 일원
	회 동 리	2	회동1리	종전 회동1리 일부
			회동2리	종전 회동2리 일원, 1-129(기존 평안리 6-22번지에서 회동리로 경계조정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번지 추가, 1-43번지 제외
	평 안 리	2	평안1리	종전 평안1리 일부
			평안2리	종전 평안2리 일원, 6-30(기존 회동리 1-43번지에서 평안리로 경계조정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번지 추가, 6-22번지 제외
	백 운 리	1		종전 백운리 일원
	한 탄 리	1		종전 한탄리 일원
기 화 리	1		종전 기화리 일원	
마 하 리	1		종전 마하리 일원	
수 청 리	1		종전 수청리 일원	
봉평면 20	창 동 리	4	창동 1 리	종전 창동1리 일부
			창동 2 리	종전 창동2리 일부
			창동 3 리	종전 창동1리 일부
			창동 4 리	종전 창동4리 일부
	평 촌 리	2	평촌 1 리	종전 평촌리 일부
			평촌 2 리	종전 평촌리 일부
	유 포 리	3	유포 1 리	종전 유포1리 일부
			유포 2 리	종전 유포2리 일부
			유포 3 리	종전 유포1리 일원
	진 조 리	1		종전 진조리 일원
	면 은 리	2	면은 1 리	종전 면은1리 일원
			면은 2 리	종전 면은2리 일원
	무 이 리	2	무이 1 리	종전 무이리 일부
무이 2 리			종전 무이리 일부	
흥 정 리	2	흥정 1 리	흥정리 193~208-7, 210~250-8, 252~264, 266-4~274, 276-290-11, 292~304, 306~316-3, 318~342, 407, 408번지 일부, 산1번지 일부, 산1-2번지 일부, 산1-3, 산30~산35-2, 산37~산40-2, 산42-1~산 43-1,산47, 산49, 산50, 산54~산65	

읍면명	리 명	이장정수	분리구명	구 역
	원 길 리	2	흥정 2 리 원길 1 리 원길 2 리	흥정리1~1-1, 3~6-1, 9-9-1, 11-1~14, 16-30, 34~34-2, 36-98, 100~139-1, 141~164, 166~190-51, 192-2, 343~354, 356~361-16, 363~372-116, 374~376, 378~406, 408번지 일부, 409~413, 산1번지 일부, 산1-1, 산1-2번지 일부, 산1-4, 산1-7, 산3-1, 산3-2, 산5~산13, 산16-1, 산18~산21-1, 산23~산26-25, 산29, 산71~산71-3, 산73-1, 산75~산77, 산79~산82-4 중전 원길1리 일원 중전 원길2리 일원
	덕 거 리	2	덕거 1 리 덕거 2 리	중전 덕거리 일원 중전 덕거리2리 일원
진부면 38	하진부리	11	하진부 1리 하진부 2리 하진부 3리 하진부 4리 하진부 5리 하진부 6리 하진부 7리 하진부 8리 하진부 9리 하진부 10리 하진부 11리	중전 하진부1리 일부 중전 하진부2리 일원 중전 하진부3리 일원 중전 하진부4리 일원 중전 하진부1리 일부 중전 하진부4리 일부 중전 하진부4리 일부 중전 하진부리 일부 중전 하진부6리 일부 중전 하진부 1리 중 하진부리 115번지 중전 하진부 6리 중 하진부리166-3, 166-4, 166-5, 166-6번지
	상진부리	3	상진부 1리 상진부 2리 상진부 3리	중전 상진부1리 일부 중전 상진부 리 일부 중전 상진부3리 일원
	호 명 리	1		중전 호명리 일원, 호명리 969-7, 970-5, 974-5~974-7, 976-8~976-12 (기존 송정리 2451-1, 2451-2, 2450-2~2450-4, 2415-1~2415-3, 2415-5, 2415-7번지에서 호명리로 경계조정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 번지 추가, 970-2, 970-4, 974-3, 974-4, 976-5, 976-7번지 제외
	송 정 리	5	송 정 1 리 송 정 2 리 송 정 3 리 송 정 4 리	중전 도암면 호명2리 일원, 2451-5, 2451-6, 2450-5, 2450-6, 2415-9, 2415-10(기존 호명리 970-2, 970-4, 974-3, 974-4, 976-5, 976-7번지에서 송정리로 경계조정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번지 추가, 2451-1, 2451-2, 2450-2~2450-4, 2415-1~2415-3, 2415-5, 2415-7번지 제외 중전 도암면 호명3리 일원 송정리중 대2537 송정리중 대2506의1~11 대2507의1~10 대2508의1~6 대2509의1~12 대2510의1~12 대2511의1~6 대2512의1~12 대2513의1~6 대2514의1~8 공원2515 대2516의1~2 잡2516의3 대2516의4 대2517의1~2 대2518의1~2 대2519의1~2 대2520의1~15 대2521의1~8 대2522의1~10 대2523의1~12 대2524의1~18 대2525의1~10 대2526의1~6 대2527의1~12 대2528의1~6 대2529의1~12 대2530의1~7 공원2531 대2532의1~8 대2533의1~4 대2534의1~8 잡2535의1 대2535의2~3 잡2536의1 대2536의2~3 도로2640번지

읍면명	리 명	이장정수	분리구명	구 역
			송 정 5 리	중전 송정3리 중 대2538,대2539
	두 일 리	2	두 일 1 리	중전 두일리 일원
			두 일 2 리	중전 두일리 일원
	척 천 리	1		중전 척천리 일원
	탑 동 리	1		중전 탑동리 일원
	동 산 리	1		중전 동산1, 2리 일원
	간 평 리	2	간 평 1 리	중전 간평1리 일원
			간 평 2 리	중전 간평2리 일원
	상월오개리	2	상월오개1리	중전 상월오개리 일부
			상월오개2리	중전 상월오개리 일부
	거 문 리	1		중전 거문리 일원
	신 기 리	1		중전 신기리 일원
	봉 산 리	1		중전 동산면 도암리 일원
	마 평 리	2	마 평 1 리	중전 마평1리 일원
			마 평 2 리	중전 마평2리 일원
	수 향 리	1		중전 수향리 일원
	화 의 리	1		중전 화의리 일원
	막 동 리	1		중전 막동리 일원
	장 전 리	1		중전 장전리 일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행정리의 설치기준) ① (생략)</p> <p>②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u>3분의 2 이상</u>의 세대주가 동의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신청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p> <p>③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리 마을회관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3Km이상 떨어져 있을 때 행정리를 분리 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제2조(행정리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현재 분리하고자 하는 리의 3분의 2이상</u>----- ----- -----.</p> <p>③ ----- ----- ----- ----- ----- ----- -----.</p> <p>----. <u>단,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한다.</u></p>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3,280,000원/년 (비용추계서 생략 :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이장수당 2,880,000원 (240,000원/월×1명×12월)
- 명절휴가비 400,000원 (200,000원/회×1명×2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추가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3,28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연락처	(033) 330 - 2210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